##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33

발의연월일: 2020. 12. 2.

발 의 자: 유정주·서동용·고영인

이동주 · 정일영 · 이규민

도종환 · 맹성규 · 조승래

윤준병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이용자인 일반 국민에 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공익성 성격이 강하지 않은 사업이더라도 사업자의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영업정지 사유가 안전이나 시장질서, 취약자 보호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 영업정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이용자의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따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과징금 부과) <u>&lt;신 설&gt;</u>	제68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군		
	수・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		
	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처		
	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		
	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u>수 있다.</u>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u>②</u> 시장·군수·구청장은 <u>제1</u>			
<u>항의 규정에 의한</u> 과징금을 납			
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			
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u>③</u> <u>제1항 및 제2항의</u> 규정에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u>의하여</u>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 • 2.	( 새	략)
	· · //.	. しつと	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u>⑤</u>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u>제4항에 따른</u>
필요한